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57
----------	-------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최형두 · 구자근 · 김예지
엄태영 · 강기윤 · 지성호
안병길 · 서일준 · 임이자
김성원 · 박수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어서 자칫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되어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를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 그 밖에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

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계기로 당내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61조 및 제262조의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배”를 “20배”로, “50배”를 “100배”로, “3천만원으로”를 “5천만원으로”로 한다.

제262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는 적발된 금액의 100배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⑧ (생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u>10배 이상 50배 이하</u> 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u>3천만원으로</u> 한다.	⑨ ----- ----- ----- ----- ----- ----- <u>20배</u> ----- <u>100배</u> ----- ----- ----- ----- <u>5천만원으로</u>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